

제3장 이용계약

제8조 (계약목적 등)

-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9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제)

- ①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③ 센터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노인학대, 성폭력 등)
- ④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협의된 경우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체결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내용대로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 ② 급여제공 범위와 제공받은 급여내용 및 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요구 할 권리
- ③ 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권리
(센터에서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범위에서 보상)

제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수급자(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월 이용료 및 월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구분		금액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 등급	566,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 내)	74,470원
	차량이용 (가정 내)	67,150원
	차량 미이용	41,930원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부담한다.